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21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8. 20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97. 8. 1부로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켜 지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장 등의 직무신설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위원장 사고시 부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등 직무범위 규정신설

나. 회의개최 등 신설 (안 제6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운영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위원의 해촉 신설 (안 제7조).

- 위원은 임기종이라도 사유발생시 해촉근거 마련

라.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문구와 내용이 변경된 사항 개정

3.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제1호중 “관계공무원”을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으로, 제2호 중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을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항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간사는 충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로 한다.

제5항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종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할 때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포일 전일까지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생략)	③----- -----.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 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 2년-----.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삭제) 3.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p>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명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점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p> <p>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지방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p>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 능할 때

제6조(의견청취) 생 략

제8조(의견청취)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수당) 생 략

제9조(수당)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회의록) 생 략

제10조(회의록)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